

# 우리나라 산업보건의 발자취…①

우리나라에서 산업보건활동이 본격적으로 시작된지도 벌써 30여년이 지났다. 그러나 어떻게 시작되었었는지 명확히 알려져 있지 않으며 기록이 정리되어 있지 못해서 새롭게 산업보건을 공부하려는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것을 가끔 보게된다. 필자가 이에 대한 글을 좀 써보고자 하는 것은 몇사람들의 권유가 있었고 또 기억에 의존해야 하기 때문에 기억이 사라지기전에 아는대로 기술해 보고자 하는 것이며 후에라도 정리 작업을 하는데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시작한다.

물론 뚜렸한 기록이 없기 때문에 필자가 알고 있는 내용을 간추리고자 하는 것이므로 그릇되게 전달될 위험도 있어서 망서려졌지만 쓰지 않는 것보다는 나을 것 같아 시작하였다. 글을 써나가면서 잘못된 부분을 수정하여 나가고자 하니 많은 협조가 있었으면 하고 기대하며 여러분들의 도움을 청하는 바입니다.

우선은 낸대별로, 흐름을 생각해서 묶어보고자 하는데 자료의 부족을 통감하면서 시작하려 한다.

가톨릭의대 이 광 목

## 1. 산업보건의 시작

우리는 산업보건의 역사를 말할 때 흔히 서양의 얘기로부터 시작하고 끝을 맺는다. 이러한 경향은 비록 산업보건분야만의 일은 아닌 것 같다. 우리의 것을 찾아 보지 않았기 때문으로 본다.

현대의 학이 들어오기전 우리나라에서도 직업성질환에 관한 기록이 있었는지의 여부는 아직 알 수 없다. 다만 중국이나 일본에서 발견되어 있는 점으로 보아 있었을 것으로 보여진다.

그러나 이 글에서는 2차 세계대전후의 산업보건에 관해 기술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이에 대해 독자들의 양해를 구하고자 한다.

필자가 산업보건과 관련된 일을 시작한 것은 1960년이었다. 그래서 그 이전의 일에 대해서는 정확한 정보를 갖고 있지 않다.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언제 산업보건활동이 시작되었는가 하는 것은 처음 시작하셨던 분들이 현재 생존해 계시지 않아서 알 수는 없다. 1963년도 사업장의 보건관리자와 보건관리요원(현 담당자에 해당)

을 대상으로 산업보건 교육을 마치고 교육장소로 쓰였던 국립보건원(당시 삼청동 소재)에서 대한산업보건협회 창립총회(1963년 11월 22일)를 열었던 일에서부터 이야기를 시작하여야 할 것 같다.

처음에는 창립총회라는 말을 사용하여 회의를 시작하였었다고 기억되는데 회의도 중에 그전에 대한산업보건협회가 결성되어 있었다는 발언이 (어떤분이었는지 현재로서는 알 수가 없음) 있었고 “재건총회”라 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으나 어떤 결정이 내려진 것으로 기억되지는 않는다.

총회에서 정관이 정해졌고 회장단과 임원진이 선출되어 사단법인으로 출발하게 되었고 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 다음해 (1964)에 등기를 내려고 서울민사지방법원에 가서 수속을 하면서 새로운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다.

제출된 서류가 반려되어 나왔다. 그 사정은 동명 즉 “대한산업보건협회”가 이미 등기되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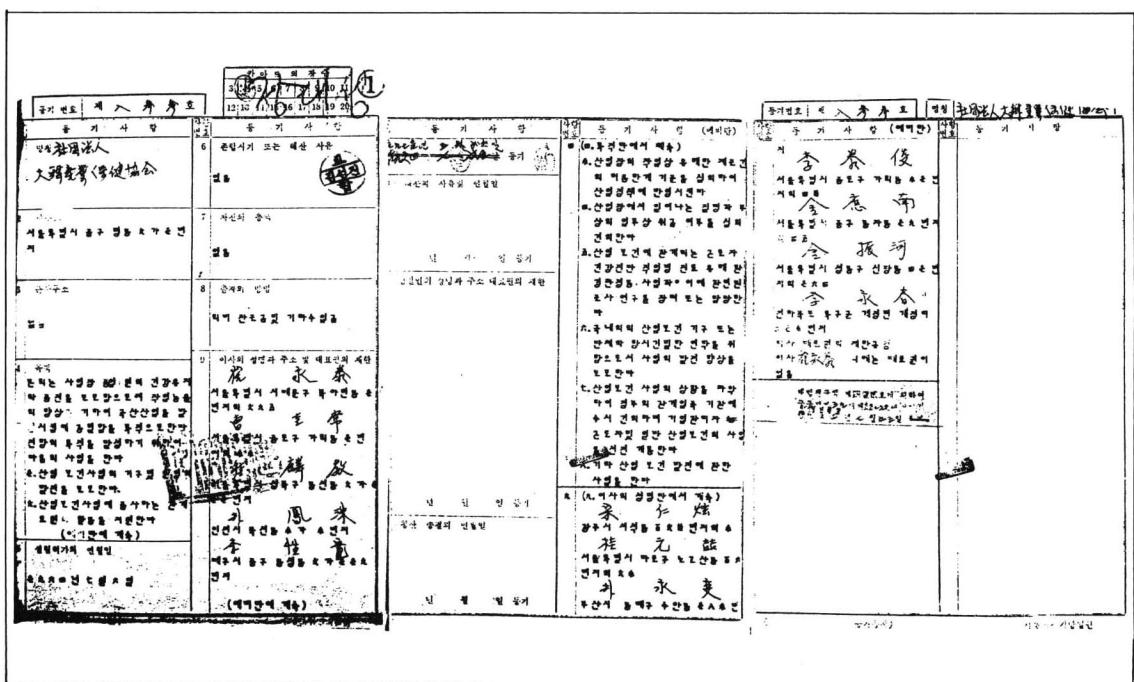
있으므로 명칭을 바꾸라는 것이었다. 앞에서도 말한 것과 같이 협회가 설립되었었다는 사실은 알고 있었으나 등기되어 있었다는 사실은 아무도 기억하고 있지 않았던 것이다. 이러한 일을 알고 돌아와서 당시 협회장으로 취임하셨던 최영태박사(현 재미)와 협회장이신 조규상교수께 말씀드렸더니 뚜렷하게 기억하고 있지 않으셨고 다만 최영태박사가 보관하고 계시던 인장(협회장인과 당시 이사진들의 인장)이 6.25 전에 사용하던 인장이라는 말씀만 하여 주셨고 작은 서류철 하나를 주셨다.

등기부등본의 발급을 신청하고 찾아보니 1949년 12월 16일에 사단법인으로 설립허가가 나 있었고 등기부에 등기되어 있었다.

발급된 등기등본에는 다음과 같은 것이 기재되어 있었다.

명 칭 : 사단법인대한산업보건협회

사 무 소 :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2가 199  
번지



## 분사무소 : 없음

**목 적 :** 산업인의 보건향상과 안전도모로서 국가산업운영에 공헌함을 목적으로 함. 전기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행함

- 산업인 보건에 관련된 제반사항
- 산업보건에 관한 제반문제의 조사 및 연구
- 산업보건에 관련되는 각종기관 및 산업체상호간의 연락 및 협조
- 산업보건에 관한 자료수집 편찬간행 전람회 강연회 영화회 개최
- 산업노동 및 보건에 관한 법규에 대한 정부 기타 공사기관에 대하여 의견제출 및 국책 협조
- 산업의학회의 개최
- 기타 본회의 목적달성을 위한 사항

## 자산의 총액 : 백원

**출자의 방법 :** 본회원 및 특별회원의 회비금과 정부의 보조금 기타수입

## 이사의 성명과 주소 및 대표권의 제한 :

李榮俊. 錢鎮漢. 權寧元. 金性基. 尹正鉉.  
劉漢徹. 劉基元. 崔吉俊. 池鎔汝. 徐載冕  
이었다(주소는 필자가 생략했음).

이 내용을 보면 산업보건협회의 목적은 현재와 크게 다른점은 없었던 같다.

장소가 무엇을 하던곳인지도 알 수 없으나 후에 찾아가 위치라도 확인하고 싶은 마음이다.

당시 초대회장이 명시되어 있지는 않고 있는데 기재순으로 보아 이영준씨였던 것 같다. 이 열분중 필자가 아는분은 전진환씨 그리고 유한철씨 뿐인데 전진환씨는 대한민국 초대사회부장관을 지내셨던 분인것 같으며 동명이인이 아니라면 이분은 짧은시절부터 노동과 사회운동을 하셨던 분으로 알려졌었고 유한철선생은 의사로서 운동가, 문학평론 등 다재다능하셨던 인물로 알려져 있다(혹시 동명이인이라면 하고 걱정이 되기는 하지만).

그외의 분들에 대해서는 아는바가 없다. 이 글을 보면서 그분들에 대한 사항을 아시는 분의 연락이 있으면 다음 기회에 소개하기로 약속을

드린다.

다만 전진한씨가 이사로 있었던 것으로 보아 의사만의 모임은 아니었던것 같이 보이며 실제로 어떤 활동이 전개되었었는지는 알길이 없다. 당시 최영태선생이 총무부장을 맡고 계셨었다고 전해듣고 있으며 6.25 한국동란으로 이사진들의 소식이 끊겼다고 알고 있으며 이분들 중에는 납치, 월북, 일본으로 간 분들이 있다고 전해져 있으나 근거있는 말을 들은것은 아니다. 당시는 정치적으로 좌우의 대립이 있었던 시기로서 산업보건분야에서도 그런 양상이 있었다고 한다. 어찌 되었던 우리나라의 산업보건을 위해서 선구적인 일을 하셨던 분들의 소식이 끊겼고 그분들의 활동에 대해서도 남아서 전해지는 것이 없다는 것은 산업보건분야에서 일하는 사람의 하나로서 호기심도 있고해서 매우 궁금하게 여겨고 있다. 그리고 그분들에게 그분들이 어떤 인물이었던간에 존경의 뜻을 표하고 싶다.

산업보건의 시작을 “협회” 설립으로 보았는데 학술적으로는 어떠하였는지 알 수는 없으나 서울대학 의과대학의 위생학교실에서 환경위생분야로서 다뤄진 것 같으나 연구업적이나 그 내용은 현재 남아 있는 것 같지 않으며 부산피난시설에도 단편적인 활동은 있었다고 듣고 있는데 자료로서 전해진 것은 없는 것 같다.

산업보건과 관련된 법률면에서는 법에 대한 지식이 없으나 일본에 강점되어 있었던 때는 공장법이라는 것이 있었다고 하나 건강과 직결된 부분은 없었다고 하며 1945년 미군점령에서도 찾아 볼 수 없다. 다만 부녀자 취업에 대한 조항이 있으나 건강과 직결된 어구나 내용은 아니다.

법률로서는 1953년 부산에서 근로기준법이 제정공포된 것이 처음이라 여겨지는데 여기에서 정한 규정이 산업안전보건법이 제정되기까지 산업보건과 관련이 있는 것일 것이다.

그러나 그 시행령이나 시행세칙은 몇년후에나 정하여졌고 또 실제로는 적용되지 못하고 있었다고 보아 옳을 것이다

현재의 대한산업보건협회는 1964년 7월 6일 설립허가가 나온 것으로 되어 있으며 초대회장에 최영태 박사 부회장에는 조규상교수가 선임되었으며 그외의 이사진은 다음과 같았다.

계린교(당시 대한중석 보건관리실장)

박봉수(당시 동일방직 보건관리자)

이성관(당시 경북의대 교수)

송인현(당시 전남의대 교수)

계원철(당시

박영섭(부산시

이태준(대한석탄공사)

김웅남(부산의대 교수)

김진하(

이영춘(개정농촌의학)

위의 12분으로 임원진이 구성되었고 사무실은 서울시 중구 명동 2가 1번지 가톨릭의대 예방의학교실(현재의 명동성당의 주교관)에 두고 업무를 시작하였다.

창설당시에 내세웠던 목적은 아래와 같았다.

## 목 적

본회는 사업장 종업원의 건강유지와 증진을 도모함으로써 작업능률의 향상을 기하여 국가산업을 발전시킴에 공헌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항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한다.

1. 산업보건사업의 기구 및 운영의 발전을 도모한다.

2. 산업보건사업에 종사하는 관계요원의 활동을 지원한다.

3. 산업장의 작업상 유해한 제조건의 허용한 계기준을 심의하여 산업정책에 반영시킨다.

4. 산업장에서 일어나는 질병과 부상의 업무상 취급여부를 심의 견의한다.

5. 산업보건에 관계되는 근로자 건강진단 직업병 진료, 유해환경 판정등 사업과 이에 관련된 조사연구를 장려 또는 담당한다.

6. 국내외의 산업보건기구 또는 단체와 항시 긴밀한 연락을 취함으로써 사업의 발전 향상을 도모한다.

7. 산업보건 사업의 상황을 파악하여 정부의 관계 기관에 수시 견의하여 기업관리자 또는 근로자 및 일반에게 산업보건의 사업을 선전 계몽한다.

8. 기타 산업보건 발전에 관한 사업을 한다.라고 되어 있다. 이 내용은 등기부에 기재된 것을 전재한 것으로 현재의 정관에 명시된 사업과는 많은 차이를 볼 수 있다.

이번호에서는 주로 협회의 설립을 주로 이야기한 것으로 실제 활동상황은 다음으로 미루기로 한다. 실제의 활동은 이보다 몇년전의 일이었고 최영태박사와 조규상교수의 개인적인 활동이었다고 생각하고 있다.

